

청주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나501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나50173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20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변론종결 2024. 7. 5.

판결선고 2024. 9. 1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20108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A과 피고 사이에 2022. 3.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기재 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 기재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A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배당될 8,555,716원이 별지 기재와 같이 공탁되었는바, 사해행위인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에는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2022. 12. 27.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인데,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A과 피고 사이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3. 23. 이후이고,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J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2022. 12. 27.경보다 9개월이나 앞서 체결되었고, 원고의 주장대로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때를 A이 E에 대리점 운영중단(폐업)동의서를 제출한 2022. 8. 10.경으로 보더라도,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약 5개월 앞서 이루어졌다.

나) A이 운영하는 G에 대한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의 과세표준액은 28,172,177원, 부가가치세액은 3,205,338원,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과세표준액은 26,991,973원, 부가가치세액은 2,870,666원,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의 과세표준액은 19,479,559원, 부가가치세액은 9,441,649원이다. 이에 의하면 2021. 1. 1.부터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3.경까지 G의 매출이 이전과 비교하여 급감하였다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G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A이 2022. 1. 25. 부가가치세 2,870,660원을 납부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고, 2021. 1. 또는 2022. 1.을 귀속년월로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29,364,870원 중 납부된 세액은 1,430,140원에 불과하므로 G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21. 1. 또는 2022. 1.을 귀속년월로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G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이 신용카드대금, 대출이자, 각종 세금 등을 연체 또는 체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2. 8. 29.경에 이르러서야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단순히 A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손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물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박성준, 판사 이효선

별지

1) 제1심 공동피고 A, C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은 그와 관련하여 패소한 A, C의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